#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715

발의연월일: 2023. 9. 26.

발 의 자:최기상・기동민・김용민

임호선 · 김영배 · 이형석

홍성국 • 박상혁 • 이동주

이해식 · 김한규 · 최인호

임종성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별로 작성된 안전관리기본계획을 종합하여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확정한 뒤,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해당 계획을 토대로 소관 업무에 관한 '집행계획' 을 작성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집행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안 전관리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계획의 작성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추진실적의 제출·분석 등 사후관리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아 계획 추진의 실효성을 점검하기 어렵고, 계획 작성 주기의 경우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어 계획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집행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의 작성주체는 매년 해당 계획의 추진 실적을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받은 전년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등의 작성주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등).

#### 법률 제 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국가의"를 "5년마다 국가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그"를 "5년마다 그"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그"를 "매년 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세부집행계획을"을 "매년 세부집행계획을"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따라 시"를 "따라 매년 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그"를 "매년 그"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따라 시"를 "따라 매년 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그"를 "매년 그"로 한다.

제25조의2를 제25조의4로 하고, 제3장에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집행계획 등 추진실적의 제출 및 보고) ①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은 제23조에 따라 확정된 전년도 집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 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시·도 또는 시· 군·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제외한다)은 제23조에 따라 확정된 전년도 세부집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받은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추진실 적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시·군·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 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제25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전년 도 시·군·구안전관리계획에 따른 그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에 관한 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5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전년도 시· 군·구안전관리계획의 추진실적(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포함한다)을 매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제24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전년도 시·도안전관리계획에 따른 그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시·도지사는 제24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전년도 시·도안전관리계획의 추진실적(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포함한다)을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제2항·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전년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 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의2제1항제2호 중 "제25조의2제1항제1호에"를 "제25조의4제1항 제1호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5조의2제4항에"를 "제25조의4 제4항에"로 한다.

제33조의3제1항제2호 중 "제25조의2제1항에"를 "제25조의4제1항에"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제22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무총리는 대통	수립 등) ①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국</u>	<u>5년</u>
<u>가의</u>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u>마다 국가의</u>
관한 기본계획(이하 "국가안전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	
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③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난 및 안	- <u>5년마다 그</u>
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국무총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23조(집행계획) ① 관계 중앙행	제23조(집행계획) ①
정기관의 장은 제22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국가안전관리기	
본계획에 따라 <u>그</u> 소관 업무에	<u>매년 그</u>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조	
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	

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 ② (생략)
- ③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 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 에 따라 통보받은 집행계획에 따라 세부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 인을 받아 이를 확정하여야 한 다. 이 경우 그 재난관리책임기 관의 장이 공공기관이나 공공 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그 내용 을 지부 등 지방조직에 통보하 여야 한다.
- 제24조(시·도안전관리계획의 수 집 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2 조제4항에 따른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과 제23조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에 따라 시·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시·도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② (현행과 같음)
③
·기기 에버키케메취 A
<u>매년 세부집행계획을</u>
제24조(시·도안전관리계획의 수
립) ①
<u>따라 매년 시</u>
 @
2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 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 관의 장은 그 소관 재난 및 안 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④ (생 략)

제25조(시·군·구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도지사는 제2 4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시· 도안전관리계획에 <u>따라 시</u>·군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시·군· 구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 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군·구의 전부 또는 일 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 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그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 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신 설>

<u>매년 그</u>
<u>.</u>
③·④ (현행과 같음) 제25조(시·군·구안전관리계획
의 수립) ①
②
<u>매년 그</u>
③·④ (현행과 같음) 제25조의2(집행계획 등 추진실적

의 제출 및 보고) ①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3조에 따라 확정된 전년도 집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시·도또는 시·군·구의 전부 또는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제외한다)은 제23조에 따라 확정된 전년도 세부집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받

은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추진실적을 행정안전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군·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 책임기관은 제25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전년도 시·군·구안전관리계획에 따른 그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시장

-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5 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전년도 시·군·구안전관리계획의 추 진실적(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포함한다)을 매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 ⑤ 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 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 관은 제24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전년도 시·도안전관리계획에 따른 그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시·도지사는 제24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전년도 시·도 안전관리계획의 추진실적(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포함한다)을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u>제25조의2(재</u>난관리책임기관의 <u>조</u>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생략)

- 제33조의2(재난관리체계 등에 대 전한 평가 등) ① 행정안전부장 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1. (생략)

4. (생략)

- 2. 제2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및 정비 실태
- 3. <u>제25조의2제4항에</u> 따른 안전 관리체계 및 안전관리규정
- ② ~ ⑥ (생 략)
- 제33조의3(재난관리 실태 공시 저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제3 호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

제2항·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전년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
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세25조의4(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현행
제25조의2와 같음)
세33조의2(재난관리체계 등에 대
한 평가 등) ①
<u>.</u>
1. (현행과 같음)
2. 제25조의4제1항제1호에
3. <u>제25조의4제4항에</u>
4.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세33조의3(재난관리 실태 공시
등) ①

항이 포함된 재난관리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관할 지역 주민 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 1. (생략)
- 2. <u>제25조의2제1항에</u> 따른 재난 예방조치 실적
- 3. ~ 5. (생 략)
- ②·③ (생 략)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1. (현행과 같음)
- 2. <u>제25조의4제1항에</u>-----
- 3. ~ 5. (현행과 같음)
- ② ③ (현행과 같음)